

■ 치과 칼럼

임프란트 2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과 치료법인 임프란트는 상실된 치아 자리에 티타늄으로 제작된 나사를 뿌리 삼아 인공치아를 심는 원리로 하는 치과 치료 분야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임프란트의 종류와 뼈 이식 그리고 최신 시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프란트 식립 위치에 따른 분류는 골내 임프란트 즉, 턱뼈 내부에 임프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술입니다. 식립 시기에 따른 분류로는 발치 즉시 시술하는 발치 즉시 시술법, 발치 후 6~10 주 사이 수술하는 지연 즉시 식립법, 그리고 발치 후 3~6개월 후 수술하는 후기 식립법이 있습니다. 수술 시기는 식립 부위의 감염 정도와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염이 없고 식립 부위 잇몸뼈가 충분히 있을수록 시기가 빨라집니다. 발치 후 적절한 뼈 이식이 없이 수술이 몇 년이 지연되면 잇몸뼈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 골밀도가 떨어져서 임프란트 고정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임프란트 뼈 이식은 픽처 (fixture) 라고 하는 티타늄 나사가 턱뼈 안에 잘 고정될 수 있게 그 기반을 탄탄히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임프란트를 잇몸뼈에 잘 심어주지 못하고 충분한 고정력을 얻지 못한다면 임프란트는 음식을 씹자마자 흔들리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고 충분한 양의 잇몸뼈에 임프란트를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뼈 이식의 종류는 그 재료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자가골 이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뼈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엉덩이 뼈를 채취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수술 부위의 인근의 잇몸뼈 조직을 떼어내어 부족한 부위에 대신 채워 넣는 방법의 자가골 이식이 시행됩니다.

두 번째로 동종골 이식이 있습니다. 같은 종의 뼈 조직을 이식하는 것으로 철저한 멸균 처리를 하여 가공처리 하여 만든 뼈 이식재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종골 이식은 돼지나 소뼈의

무기질을 채취하여 가공한 뼈 이식재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합성골 이식은 사람뼈의 구조와 유사하게 화학적으로 합성 가공한 뼈 이식재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뼈 이식 재료는 수술 부위나 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복원하고자 하는 잇몸뼈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이식된 뼈 이식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뼈에 동화가 되어 임프란트가 단단히 고정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뼈 이식재 자체가 주변의 자기 자신의 뼈와 붙어서 잇몸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식한 부위의 지지대 역할만을 일정 기간 해주고 그래서 생성된 공간에 서서히 자기 본인의 새로 형성되는 뼈가 그 공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뼈 이식만 먼저 해야 하는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기다린 후 임프란트를 식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가혈(CGF) 임프란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고농축 성장인자를 치조골 이식 시 수술 부위에 이식해 잇몸뼈 재생을 유도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토록 합니다. 환자의 혈액에서 채혈 후 원심분리를 통해 성장인자가 풍부한 자가혈을 분리하여 뼈 이식재료에 섞어서 뼈 이식 주위의 뼈 재생 세포 및 잇몸 조직 세포를 활성화 시켜 임프란트 수술의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채취한 자가혈로 차단막을 만들어서 이식한 잇몸뼈가 제 형태로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게 큰 장점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임프란트 보철의 종류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리나 치과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영주권을 받으면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막상 받아보니 별거 아닌데…… 이거 받겠다고 그렇게 고생한 거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말 그대로 녹색 빛이 도는 이 Green card 한 장이 상징하는 ‘미국의 영구 거주민’이라는 안정적인 신분이 가져다 주는 안도감과 동시에 과거의 힘들었던 기억과 감정들이 섞이면서 내뿜는 말씀들이 낯설습니다. ‘애증’의 영주권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미국이민법상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는 여전히 미국법상 외국인이며, 미국에 재입국 시에 ‘Arriving Alien’이라 하여 입국 자격(admissibility)을 국토안보부 산하의 CBP 입국심사관에게 재량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십시오. 힘들게 얻은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게 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체류 기간별 간단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180 일 이내 (6 개월 이내): 입국 심사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입국 거절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180 일 초과 및 1 년 이내: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CBP officer는 재량으로 영주권자의 여행이 temporary였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을 넘어 영주권을 포기(abandon)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과의 연관(ties)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지속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남아 주택



소유나 리스를 하고,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서류를 소지하여 보여주는 경우 충분히 입국 가능합니다.

3. 1 년 이상 장기체류: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카드는 입국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행 허가증이라고 번역되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 허가증은 CBP officer의 입국심사 시 영주권을 abandon하지 않은 의도로 간주됩니다. 여행 허가증은 2 년간 유효하며, 연속해서 신청 시 2년 연장, 그리고 세 번째는 1년짜리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신청 시와 지문 날인 시점, 이 두 시점에는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의도를 abandon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거에 받았던 비이민비자를 사용하거나, ESTA나 비이민비자를 새로 신청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